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5월 6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5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5. 20) 상정
-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5. 20)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남 상 수)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0283호, 2007. 9.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금액을 당초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를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로 상향 조정함.(안 제4조제1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내용 | 답변 내용 |
|-------------|-----------------------------------|
| ○ 조례개정 사유는? | ○ 관련 상위법령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함.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237호 |
| 의결 년월일 | 2008. 5. 23 (제143회) |

제출년월일 : 2008. 5. 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283호, 2007. 9.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금액을 당초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를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로 상향 조정함.(안 제4조제1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9조에 따라”로 하고, “영 제58조제2항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을 “영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및 감독대상공사 기준”을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15인”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6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을 “「고등교육법」에 규정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으로 하며, “관련 법령에 의한”을 “관련 법령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관련법령에 의하여”를 “관련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5억원”을 “1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107조에 따라”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인 이상 10인 이내”을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하고, “위원회에 부의하여야”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10조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계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로 하고,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로 하며, “기준에 따라”를 “기준에 따른”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를 “제9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영 제58조제2항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천시 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p> <p>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p> | <p>제1조(목적) ----- ----- ----- ----- -----제109 조에 따라----- ----- -----영 제59조 및 제60 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 비지급 및 감독대상공사 기준 ----- -----.</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 -----1명-----15명----- -----.</p> <p>② ----- ----- ----- -----제106조제3 항에 따라----- ----- -----.</p> <p>1. 「고등교육법」에 규정된-----</p> |

| 현행 | 개정안 |
|---|--|
| <p>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p> <p>2. (생략)</p> <p>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p> <p>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p> <p>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p> <p>6. (생략)</p>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략)</p> <p>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5. (생략)</p> | <p>-----</p> <p>-----</p> <p>2. (현행과 같음)</p> <p>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p> <p>-----</p> <p>4.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p> <p>-----관련 법령에 따른-----</p> <p>-----</p> <p>5. 관련 법령에 따라-----</p> <p>-----</p> <p>-----</p> <p>6. (현행과 같음)</p>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p> <p>제4조(기능) ① -----</p> <p>-----50억원-----</p> <p>-----10억원-----</p> <p>-----.</p> <p>1.~5.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② (생략)</p> <p>1. (생략)</p> <p>2. <u>기타</u>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p> <p>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u>5인 이상 10인 이내</u>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p> <p>③~⑥ (생략)</p> <p>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u>관계공무원</u>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u>1인</u>을 두며,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그 밖에</u>----- ----- -----</p> <p>제6조(소위원회) ① ----- ----- ----- ----- -----<u>제107조에 따라</u>----- ----- -----.</p> <p>② ----- <u>5</u> <u>명 이상 10명 이내</u>----- ----- ----- ----- -----.</p> <p>③~⑥ (현행과 같음)</p> <p>⑦ ----- ----- -----<u>관계 공무원</u>----- ----- -----.</p> <p>⑧ ----- <u>1명</u>----- -----.</p> |

| 현행 | 개정안 |
|---|--|
| <p>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u>임기만료전이라도</u> 당해 <u>위원</u>을 해촉할 수 있다.</p> <p>1.~3. (생략)</p> <p>4. <u>기타</u>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p> <p>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u>관계전문가</u>와 주민 참여 감독자에 대하여는 「<u>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u>」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u>기준에 따라</u>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u>관계공무원</u>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u>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u> 관계 기관 및 <u>관계전문가</u>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 <p>----- ----- -----.</p> <p>제11조(위원의 해촉) ----- ----- -----<u>임기만료 전이라도</u> 해당 <u>위원</u>-----.</p> <p>1.~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p> <p>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u>관계 전문가</u>----- ----- 「<u>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u>」에 <u>따라</u>----- -----<u>기준에 따른</u>----- ----- -----<u>관계 공무원</u>----- ----- -----.</p> <p>② <u>제9조에 따라</u> 관계 기관 및 <u>관계 전문가</u>----- ----- ----- -----.</p>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지급기준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07.9.20>

1.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제1항에 의한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07.9.20>

1. 시·도위원회 : 당해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 당해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 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